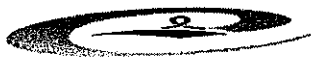


본 자료는 2004. 9.23(목) 朝刊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 산업자원부 공보관실	작성과	무역정책과
		담당	과장 김경원 사무관 이경훈
		전화번호	2110-5315

<<http://www.mocie.go.kr>>

전자무역혁신을 위해 무역자동화법 전면 개정키로

- 산업자원부, 전자무역촉진법(가칭)에 관한 공청회 개최 -

- 산업자원부는 현행 무역자동화법을 전자무역촉진법(가칭)으로 전면개정키로 하고 무역업계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월 22일(수) 14:30 코엑스 장보고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음
- 정부는 지난 9월 8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전자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, 무역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'07년까지 'e-Trade플랫폼'을 구축하는 등 「전자무역혁신계획」을 확정하바 있으며,
 - * e-Trade 플랫폼 : 모든 기업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등 IT기술을 이용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무역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적 인프라로 무역업무 전반을 단절없이 처리할 수 있는 신 개념의 단일창구 국가 전자무역 허브
- 산업자원부는 동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무역자동화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임
-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 및 패널토의자 등은 현행 VAN을 통한 1:1체제로는 무역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,
 - '07년까지 e-Trade 플랫폼을 구축하여 인터넷기반의 N:N체제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무역자동화법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음

□ 특히, 법개정을 통해 전자무역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전자문서를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보존하고, 전자문서의 당사자·내용·송수신여부를 증명하는 등 전자무역문서의 유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,

○ 마케팅·상역·물류·통관·결제 등 모든 무역유관기관을 국가 전자무역망으로 연계하여 무역업체 중심의 단일창구 시스템을 구축하여 One-Stop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음

□ 또한, 전자무역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및 온라인 해외시장개척을 활성화하고,

○ 전자무역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및 전자무역 전문인력의 양성과 무역교육기관등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기되었음

* 주제발표자 : 이상진 건국대교수, 안병수 서울디지털대교수, 이해완 변호사
패널토의자 : 이창주 현대차 차장, 정한구 LG전자 부장, 엄윤대 한진해운 부장
김정기 갑을합섬 부장

□ 이날 서영주 산업자원부 무역유통국장은 “현행 무역자동화법을 전자무역촉진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‘07년까지 e-Trade플랫폼을 구축완료할 경우 연간 약 1조8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어, 2010년 세계무역 8강에 진입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”이라고 밝힘

참 고 : 1. 전자무역촉진법(가칭)에 관한 공청회 계획
2. 전자무역에촉진에관한법률(안)의 주요 내용

<참고 1>

전자무역촉진법(가칭)에 관한 공청회 계획

☐ 목적

- 무역자동화법 개정에 관한 업계 및 학계의 의견 수렴

☐ 일시 및 장소 : 9. 22(수) 14:30~17:00, 코엑스 장보고홀(3층)

☐ 참석 (총 100여명)

- 업계 : 무역업체, 솔루션 업체 등
- 학계 : 건국대, 서울디지털대, 청주대, 통상정보학회 등

☐ 행사 계획(안)

시 간	내 용	비 고
사 회 : 한국무역협회		
14:30-14:40	개 회 사	서영주 산업자원부 무역유통국장
14:40-15:00	주제1 : 전자무역기반사업자제도	이상진 건국대학교 교수
15:00-15:20	주제2 : 전자무역문서의 유통 필요성	안병수 서울디지털대 교수
15:20-15:40	주제3 : 무역자동화법 주요 개정방향	이해완 변호사(로앤비(주))
15:40-16:00	Coffee Break	
16:00-17:00	종합 토론 및 질의 응답	사회 : 청주대 이호건 교수 패널리스트 : 4명 - 현대자동차 이창주 차장 - LG전자 정한구 부장 - 한진해운 엄윤대 부장 - 갑을합섬 김정기 부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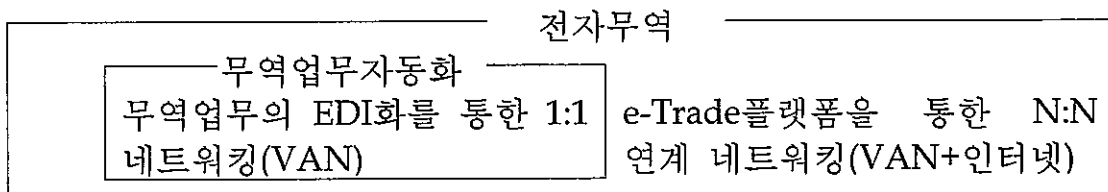
<참고 2>

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(안)의 주요 내용

1. 법령의 개정

- ‘무역업무자동화’란 무역과정에서 서류를 수작업에 의해 제출 하던 것을 EDI에 의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
- ‘전자무역’이란 EDI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전자문서의 제출도 포함하므로 무역업무자동화를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
- 따라서, 개정법은 인터넷 기반의 e-Trade플랫폼을 통해 모든 무역절차가 연계되는 것까지 적용되어야 하므로 무역업무자동화보다 포괄적 개념인 전자무역으로의 개정이 필요

<무역업무자동화와 전자무역의 관계>



2. 법률의 적용범위 확대

□ 무역의 정의

- '무역'의 개념은 대외무역법을 준용하여 현행 **상역과 외환업무** 위주에서 **통관, 물류, 결제업무도** 포함될 수 있도록 정의
- 대외무역법은 무역을 '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'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상역·외환·통관·물류·결제가 포함됨

□ '무역관련 법령' 범위의 확대

- 현행법은 무역관련 법령의 범위에 대해 법률에서 대외무역법, 수출보험법, 외국환거래법, 통합공고 관련법률을 명시하고 있음
- 개정법이 모든 무역절차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역관련 법령범위의 확대가 필요
- 따라서, 법률에 무역의 3대 기본법인 대외무역법, 외국환거래법, 관세법을 명시하고, 시행령에 관련 법률을 추가할 예정
- ※ 다만, 무역관련법령으로 포함된다고 하여 해당 법령의 고유업무가 전자무역촉진법으로 이관되는 것은 아님

3. 전자무역기반사업자제도의 도입

□ e-Trade플랫폼의 정의

- 전자무역기반시설(e-Trade플랫폼)이란 전자무역문서의 중계, 보관, 증명 등의 업무를 무역유관기관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함
- 무역자동화망은 1:1기반 네트워킹으로 무역업체가 다른 무역유관기관에는 전자문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나,
- 전자무역기반시설은 N:N기반 연계 네트워킹으로 한번 제출한 전자문서가 유통되어 중복제출이 방지

□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제도

- 현행 복수 지정사업자제도에서 전담 지정사업자 제도로 개정
-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복수로 지정할 경우 국가차원에서는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이므로 전담사업자로 지정

□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업무

- 기반사업자만 할 수 있는 전담업무와 기반사업자와 민간기업 모두가 할 수 있는 개방된 업무로 나눔
- 전담업무의 경우 기반사업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기반사업자만 하도록 함
- 전자무역문서 중계·보관 및 증명, 무역유관기관과 연계가 이에 해당
- 개방된 업무의 경우 전자무역 지원 업무로서 전자무역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기업과 경쟁이 필요
- 전자무역대행서비스, 무역정보의 제공 등이 이에 해당

4.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

□ 표준화된 전자무역문서의 사용

- 상업송장, 포장명세서 등을 전자문서로 유통할 경우 표준 문서만을 사용토록 하여 제3자 유통이 가능하도록 함

□ 기반사업자 중계의무화를 통한 무역절차 간소화

- 빈번하게 사용되는 무역문서 중 전자문서로 유통이 가능한 문서를 기반시설을 사용하도록 하여 반복제출업무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함

□ 기반시설과 무역유관기관과의 연계

- Single Window를 구현하려면 기반시설과 무역유관기관의 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므로 무역유관기관에 연계의무를 부여

* Single Window : 사용자인 무역업체 관점에서 모든 무역업무를 단절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된 환경을 제공하는 단일창구 시스템

□ 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의 효력

- 기반사업자를 통해 전자무역문서를 사용한 경우 무역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종이문서로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여 전자무역문서 이용의 법적 효과를 확실히 보장함

5. 전자무역문서의 보관 및 증명

□ 전자무역문서 보관의 효력

- 무역업자·무역유관기관에게 문서보관 의무가 있는 경우, 당해 문서를 기반사업자가 전자문서로 보관하면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
- 기반사업자는 전자문서 보관에 있어 안전성, 전문성이 있으므로, 문서보관 업무를 대행하여 무역업자등의 비용을 절감

□ 전자무역문서 증명

- 무역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이 무역업무를 전자무역문서로 하여 향후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전자문서의 내용, 송·수신시점, 당사자 등에 대한 증명방법이 부재
- 무역업무가 종이문서와 마찬가지로의 안정성과 법적 효력이 있는 전자문서로 수행되려면 Off-line의 내용증명처럼 전자무역문서의 증명제도가 확보되어야 함
- * 미국, 일본 등에서는 '전자공증서비스(DNS: Digital Notary Service)'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다수 등장하여 전자문서를 통한 의사표시의 법적 안전성을 보장함
- 기반사업자가 전자문서를 증계한 경우, 전자문서의 내용·시점·당사자 등에 대한 증명을 하고 이에 대해 법적 증명력을 부여함으로써,
- 전자무역문서 이용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전자무역 기반시설을 통한 전자무역문서 이용의 활성화 유도

6. 전자무역문서 이용의 촉진

☐ 정부의 전자무역문서 이용촉진 책무

- 전자무역 활성화를 저해하는 법적·제도적 장애를 제거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정부의 책무 규정

☐ 첨부서류의 전자문서화를 통한 이용 촉진

- 첨부서류가 종이문서로 이미 작성된 경우, 위·변조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스캔등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작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

7. 전자무역문서의 보안 및 관리

☐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에 관한 보안

- 기반사업자가 관리하는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,
 - 기반시설에 기록된 정보를 위·변조의 금지, 해킹등으로 인한 훼손, 임직원에 의한 정보 누설 또는 도용을 금지함

☐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공개

- 원칙적으로 기반시설에 기록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함
 - 다만, 국가안보와 기업 영업비밀에 침해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개하며,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

8.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

□ 전자무역서비스 제공전문업자의 지원

- 전문서비스업자는 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중개알선, 온라인 해외마케팅, 전자무역 대행, 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 지원, 전자무역을 위한 무역업자의 교육·홍보 등을 수행
 - 특히, 중소기업의 온라인 해외시장개척·계약체결·수출입절차 등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확산

9. 전자무역 기술개발의 추진 등

□ 전자무역 관련 기술 개발 지원

- 국가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전자무역 관련 기술 중 민간 개발이 어렵거나 수입의존도가 큰 핵심 솔루션 기술을 발굴·지원

□ 전자무역 인력양성 지원 방안

- 대학 및 무역교육기관의 전자무역 커리큘럼 개발 지원
 - 전자무역 관련 정책 및 제도, 컴퓨터 관련 기술, 무역프로세스 등 다학문에 걸친 복합적인 지식을 반영하는 커리큘럼 개발
- 수요 중심의 인력양성을 위해 산학연계시스템 구축 지원
 - 기업과 교육기관의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무역 현장에서 요구되는 인력을 배출될 수 있도록 지원

10. 국가전자무역위원회의 법제화

- 국가적 과제인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국무총리훈령상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